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15-1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강화하고 위원의 연임 제한을 해제하며 고문의 임기를 강화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자치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강화하고 위원의 연임 제한 해제하고 고문의 임기 강화

- 1)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를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로 개정
- 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을 “2년으로 하며 연임”으로 개정
- 3)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나. 조례 개정 전·후 임기

주민자치 위원장		주민자치 위원		고 문	
개정 前	개정 後	개정 前	개정 後	개정 前	개정 後
임기 1년 최장 3년	임기 2년 최장 4년	임기 2년 최장 8년	임기 2년 연 임	임기 2년 최장 2년	임기 2년 최장 4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zigl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구성 등)중 ⑧“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임기중에 있는 위원장 중 2회 연임중인 위원장은 종전의 조례에 따르며 그 외 위원장과 위원·고문은 시행되는 조례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구성 등)⑧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제17조(구성 등) ⑧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